노인인권에 관한 정부간 실무그룹(IGWG)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제1차 회기
제네바, 2026년 7월 13일–17일
First session
Geneva, 13-17 July 2026

제출의견 비공식 요약
SUMMARY OF INPUTS RECEIVED

서론

1. 노인인권에 관한 정부간 실무그룹(IGWG)은 노인의 인권을 증진·보호하고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마련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인권이사회 결의 제58/13호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2026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차 회기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간 실무그룹 의장 겸 보고관은 회원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본 문서의 포괄적 프레임워크, 핵심 원칙 및 전반적인 구조에 관한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24일 기준, 회원국 및 참관국,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 국가인권기구(NHRI),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CSO)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총 202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다.
2. 본 비공식 요약본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제출된 원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ine prejudicio*). 2026년 6월 24일 이후 접수된 건을 포함하여 제출된 모든 의견서의 원문은 OHCH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1]

I. 포괄적 프레임워크

3. 노인 인권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가 지향해야 할 포괄적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여러 국가가 제출한 의견의 공통된 요지는 본 문서가 명확히 '인권에 기반

[1] https://www.ohchr.org/en/calls-for-input/2026/call-inputs-general-framework-architecture-and-guiding-principles-legally

'해야 하며, 노인이 모든 인권을 완전하고 평등하게 누릴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재확인(re-affirm)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많은 의견서에서는 시혜적·욕구 중심적 접근이나 의료화된 접근에서 벗어나, 노인의 자율성, 주체성, 존엄성 및 이행 가능한 권리를 인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4. 복수의 국가들은 기존의 인권 조약들이 실제 노인의 인권 향유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법적·정책적 틀 내에서 노인의 가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괄적 프레임워크는 추가적인 보호 계층을 제공하고, 국제 인권법 체계 내에서 노인을 구조적으로 가시화하며, 지속적인 배제, 차별, 방임의 패턴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설명되었다. 전용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노인의 인권은 기존 국제 인권 조약 전반에 파편화되어 있으며, 연령주의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보편적 인권을 고령화 및 노년의 특수한 맥락에 의미 있게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문서가 요구된다.
5. 일부 국가들은 권리 내용과 해석상의 혼란 및 충돌을 방지하고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수립될 문서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양대 국제인권규약 및 기존 국제 인권 법적 자산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기존 조약 조항을 참조하여 노인에게 이미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문서가 적용의 명확화, 보호 강화, 입법적 공백 메우기를 통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복을 피하고 부가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해석이나 규범적 발전이 필요한 지점을 정확히 식별하는 방법론적 단계로서 기존 조약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매핑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6. 여러 국가는 개방형 고령화 실무그룹(OEWGA)의 성과, OHCHR의 관련 분석,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및 '2026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등 기존의 논의 과정과 규범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제도적 공백을 식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책무를 포함하여 문서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유용한 지침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성법(soft-law) 체계는 노인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복지의 수혜자로 다루는 경향이 있어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7.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국가들은 향후 문서가 핵심 국제 인권 조약 체계의 일부가 되는 포괄적 협약(comprehensive convention)이어야 하며, 노인에게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 전반을 통합·명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 의견서에서는 문서가 범위와 관계

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이행이 어려운 정의나 문구를 도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국가들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보완성에 집중해야 하며, 보고 부담 및 조약기구 재정과 관련하여 국가와 유엔 체계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추가적인 보고 및 모니터링 요건이 국가와 기존 조약기구에 미칠 재정적·제도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8. 연령주의와 연령 기반 차별은 노년기 권리 침해의 구조적 원인이자 포괄적 프레임워크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많은 의견서에서는 연령주의가 명시적인 차별 대우뿐만 아니라 비가시화, 고정관념 형성, 제도적 배제, 그리고 자율성에 대한 온정주의적 제한의 정상화를 통해 작동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포괄적 프레임워크는 연령주의를 고유한 형태의 위해로 명시하고, 법·정책·실천 및 신기술 환경에서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9. 몇몇 국가들은 인종이나 성별 등의 사유와 달리, 대부분의 유엔 핵심 인권 조약의 비차별 조항에 '연령'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호의 불균형과 사법적 구제의 한계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새 문서의 주요 부가가치는 명확한 연령 평등 규범을 확립하고, 공공 및 민간 영역 전반에서 직·간접적 연령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10. 또 다른 의견서들은 포괄적 프레임워크가 인구구조 변화와 수명 연장을 반영하고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인은 보호의 공백, 사회적 기여, 생활 환경 등에서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여러 국가는 노년기를 경직된 연령 기준에 결부해서는 안 되며, 기능적이고 비낙인적인 개념과 정의를 채택하여 맥락에 부합하는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1. 다수의 의견서는 포괄적 프레임워크에 '생애주기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불이익이 시간에 따라 누적되어 노년기의 삶을 결정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노년기 인권 향유를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 고용, 사회보장, 보건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과 연결하고, 즉각적인 장벽과 잠재된 구조적 요인을 함께 해결하는 전략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12. 국가들은 교차성 관점의 중요성도 광범위하게 강조하였다. 노인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성별,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이주 배경, 지리적 고립 등의 사유가 복합적·교차적으로 작용하는 차별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고령 여성과 장애 노인이 인권 향유에서 더 큰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포괄적 프레임워크 내에 성인지적 및 장애 포괄적 접근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3. 일부 의견서에서는 포괄적 프레임워크가 노인을 권리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경제·사회적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주체로 인식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를 오직 경제적 생산성과만 연결 짓는 담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것이 인권 보장 틀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었다.
14. 여러 국가는 급격한 디지털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등장, 그리고 재난 및 기후 변화와 같이 노인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는 현대적 과제에 대해 포괄적 프레임워크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기술 및 디지털 환경은 인권 향유의 구조적 결정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디지털 중심 서비스 전환 시 노인이 배제, 사기, 차별의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 AI,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인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음도 함께 언급되었다.
15. 몇몇 의견서에서는 포괄적 프레임워크가 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제도적 역량, 자원 제약 등 국가적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단계적 실현, 기술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국제적 감독이 국가 주권과 내정불간섭 원칙에 부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16.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권리는 주로 가족·지역사회 지원망 내에서 행사되며, 그 책무는 가족, 지역사회, 시민사회, 그리고 보조적으로 국가가 분담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다른 서면 의견은 가족의 돌봄을 주된 지원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한편, 보완적인 보호 및 보장 기능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반면, 가족과 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연대나 공동 책임이라는 표현이 국가의 인권 존중·보호·실현의 1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희석하거나 구속력 있는 의무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의견도 있었다.
17. 일부 국가는 기존 조약과의 중복, 보고 부담 증가, 개념의 과도한 확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새로운 틀이 기존 규범을 약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8.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의견을 통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가 노인 인권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협약은 인권 기반 접근에 뿌리를 두고 기존 유엔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노인 보호의 입법적·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19. **국가인권기구들**은 기존의 국제적 틀이 노인과 관련하여 파편화되어 있고 구체성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 및 이행 공백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기

존 권리의 노인 적용을 명확히 하고, 시혜적 접근에서 완전한 권리 주체로서의 인정으로 전환하며, 연령주의와 구조적 연령차별을 해결하고 자율성, 참여, 평등 원칙을 내재화하는 국제법 기반의 변혁적 인권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 국가인권기구들은 또한 불이익의 누적이 노년기 복합·교차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생애주기 및 교차적 관점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노인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데이터 수집 및 가시성 강화, 그리고 폭력, 장기요양(long-term care), 감독 및 책임성 메커니즘 부재 등 국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이행 공백 해결을 촉구하였다.
21. **국제기구들**은 기존 국제인권법에 기반한 인권 중심 틀을 지지하며, 규범적 공백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러한 기준이 노년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한 기구는 본 협약이 단순히 최소 기준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권리 자격을 모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2. 제출된 의견 전반에 걸쳐, 노년기의 모든 인권 향유는 성별,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및 기타 요인과 관련된 다차원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력히 강조되었다. 또한, 건강 상태, 문화, 성별, 사회경제적 상황 및 삶의 궤적의 차이가 노년기의 권리 실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인의 다원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질적이거나 결함 중심의 접근 방식을 지양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3. 성별과 관련된 구조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고령화는 심화된 젠더적 과정(gendered process)이며, 고령 여성은 빈곤, 배제, 사회보장 접근성 제한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크게 받는다.
24. 한 의견서는 본 틀이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eing)" 개념에 기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웰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노년기 인권 향유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 보건 및 돌봄과 관련하여 권리에 대한 통합적·시스템적 접근이 강조되었으며, 증진, 예방, 일차·전문 의료, 재활, 완화 의료, 장기요양을 포함한 돌봄의 전체 연속선(continuum of care)이 일관되고 권리 기반 방식으로 다뤄져야 함이 지적되었다.
25. 기타 의견에서는 주거, 토지, 도시 환경 등 노인이 노숙, 주거 불안정, 접근 불가능한 인프라와 같은 구조적 장벽에 직면하는 특정 분야와 맥락을 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6.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들은 본 틀이 규범적으로 정밀해야 하며, 기존 인권 메커니즘을 중복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보호를 강화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7.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가 고령화에 대한 복지, 자선, 의료화된 접근을 완전히 탈피하는 변혁적·인권 기반 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노인이 돌봄이나 보호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는 완전한 권리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틀은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배제와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법적·제도적·사회적 틀을 재구성함으로써 변혁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8. 핵심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된 요소는 연령주의를 노년기 인권 침해의 구조적·시스템적 근본 원인으로 식별한 점이다. 연령주의는 대인관계, 제도, 법률, 문화 등 다차원적으로 작동하며 보건, 고용, 사회보장, 사법 접근성 등 전 분야에서 노인의 구조적 소외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금지뿐만 아니라 디지털·기술 환경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발현을 해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9. 제출된 의견서들은 노년기에 겪는 불평등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된 불이익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불이익은 이전부터 경험해 온 차별, 빈곤, 성 불평등에 의해 형성된다. 이는 고령화를 역동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노년기를 넓은 사회경제적·구조적 궤적 내에 위치시키는 생애주기 접근법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관계자들은 효과적인 대응이 현재의 조건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결정 요인까지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0. 다원성, 불평등 및 교차성에 대해서도 강력한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의견들은 노인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양성, 불평등, 교차성 역시 강조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별, 장애, 인종, 이주 상태, 사회경제적 위치, 지리적 위치와 연계된 복합적 차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고령 여성, 소수자, 원주민, 문화적·언어적 다원 커뮤니티의 상황에 주목해야 하며, 정보 접근 제한, 낮은 문해율, 사회경제적 배제 등 구조적 장벽이 실제 인권 향유를 방해하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31. 제출된 의견들은 복잡한 제도,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의 부재, 언어 장벽, 디지털 배제,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노인의 인권이 실효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

적하였다. 따라서 문서는 시스템 설계 및 서비스 전달의 개선을 통해 규범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접근 가능하며 실행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2. 노인을 의존성이나 부담의 틀로 바라보는 담론에 도전하며, 이들을 사회의 적극적 기여자로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유급·무급 노동, 돌봄 제공, 지식 전수, 시민 참여 등을 통한 노인의 경제·사회·지역사회 참여의 가치가 언급되었다.
33.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령화를 경직된 연령 기준에 근거하기보다 맥락 의존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고정된 연령 기준은 연령 기반 차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연령 관련 불이익을 겪는 개인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삶의 경험과 사회적 맥락에 기반한 유연하고 포용적인 정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34. 다수의 의견서는 기존 국제 및 지역 규범 틀 내에 문서를 위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존 틀을 바탕으로 구축하는 것이 규범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 지구적 차원의 규범 발전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35. 동시에 빈곤, 취약한 사회보장 체계, 농촌 지역의 고립, 폭력·학대·방임에의 노출 등 지속적인 구조적 불평등과 위험 맥락을 다룰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분쟁, 이주, 인도적 위기의 영향을 받는 개발도상국 노인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었다.
36. 디지털화, AI, 기후변화, 돌봄 체계의 변화 등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적절한 규제 및 정책 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형태의 배제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래지향적이고 적응력 있는 협약이 필요하다.
37.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본 체계가 노인의 삶의 경험, 주체성 및 참여에 기반해야 하며, 문서의 성안, 협상, 이행 및 모니터링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노인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참여는 단지 하나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포용적인 협의 절차, 대표단 내 대표성 확보, 그리고 모니터링 기구 참여 등을 통해 정당성, 실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요건으로 규정되었다.
38. 전문가 및 학계를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서 역시 인권 기반의 변혁적 틀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여러 의견은 노화가 누적된 사회경제적·맥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생애주기 접근 방식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답변은 노년을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연령주의에 대한 변혁적 대응을 촉구하였다.

39. 일부 의견은 노년기의 상호의존성, 지원의 연속성 및 동행을 포함하여 인권의 관계적 차원을 추가로 강조한 반면, 다른 의견들은 전 세계적으로 맥락화된 관점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40.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사회보장 및 개발 맥락에서의 구조적·글로벌 불평등을 지적하였으며, 재난·분쟁 등 위험 상황에 대한 강화된 인정 및 모니터링·데이터를 통한 연령주의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II. 핵심 원칙

41. 노인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핵심 원칙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많은 국가들은 본 협약이 해석, 이행 및 모니터링을 이끌 수 있는 간결하면서도 견고한 일반 원칙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42. 인간의 존엄성은 노년기 삶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등급화하는 접근법에 대한 방어막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여러 국가는 존엄성이 내재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것이며 기능적 능력, 자율성 또는 생산성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본 문서가 구체적인 권리 및 인권을 통해 존엄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3. 연령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명시적 보호를 포함하여, 평등 및 비차별은 중앙적 원칙으로 반복되어 제시되었다. 많은 의견은 이 원칙이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을 모두 다루어야 하며, 제도적·구조적 형태를 포함한 연령주의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의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국가의 의견은 실질적 또는 변혁적 평등을 강조하였으며, 여기에는 추상적 차원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장벽을 해결할 필요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규범이 형식적으로는 중립적인 것처럼 보일 때조차 지속되는 배제의 유형을 포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 기구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44. 의사와 선호, 의사결정 및 자결권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의견들은 노인을 보호의 수동적 수혜자로 묘사해서는 안 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 강화 조치를 통해 그 필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의견은 자율성을 법적 능력 보호 장치

및 지원 의사결정과 연결하였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방식에서 시사점을 얻었다. 한 의견은 결정 자율성과 실행 자율성을 포함하여 자율성의 다양한 차원을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 제도가 노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5. 참여와 포용은 원칙인 동시에 운영상 요구사항으로 강조되었다. 다수의 국가 의견은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및 결정의 수립 과정에 대표 기구를 통한 방식을 포함하여 노인이 의미 있게 자문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참여 원칙은 디지털화로 인해 배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접근 가능한 절차 및 비디지털 참여 채널의 필요성과도 연결되었다. 한 의견은 참여가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과 의사결정 환경을 점점 더 좌우하고 있는 디지털 및 AI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 발전하는 기술 환경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6. 접근성은 범분야적 원칙으로 다루어졌으며, 물리적 환경을 넘어 정보, 통신, 서비스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여러 국가는 의견에서, 특히 정부와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설계를 통한 접근성 확보(accessibility-by-design)와 장벽 제거가 노년기 인권 향유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47. 폭력, 학대, 방임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는 반복적으로 제기된 원칙이자 특정 보호 공백 영역으로 부각되었다. 의견들은 노인이 주로 가정 환경이나 시설 돌봄 환경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제도적 및 디지털 형태의 학대에 직면할 수 있으며, 국가가 예방적·보호적·구제적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의견은 훈련된 서비스 및 효과적인 연계 시스템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고 전문화된 신고 및 구제 기구를 강조하였다.
48. 여러 국가의 의견은 세대 간 연대, 돌봄 및 공동 책임성을 지도 원칙으로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개념에 다르게 접근하였다. 일부는 연대를 인권 향유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포용과 노인의 기여에 대한 인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설명한 반면, 다른 일부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것이 국가의 책임을 대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다수의 의견은 연대에 관한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약화되거나 권리주체 간의 위계가 형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 의견은 권리 기반 보장과 더불어 노인 보호에 있어 인간의 의무와 공동 책임성에 대한 새로워진 성찰을 더욱 강조하였다.
49. 기존 인권의 재확인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은 모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노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본 문서가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본 문서가 '특별한 권리'를 창출하기보다는 노년기에서의 권리 적용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서면 의견은 본 문서가 기존의 어떠한 규범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 의견은 노인의 권리가 이미 인권 규범 체계에 존재하는 경우, 권리의 내용과 해석에 대한 모순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권리의 정확한 문언을 새 문서에 그대로 복제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강조하였다. 다른 의견은 기존 권리의 불필요한 반복을 경계하고, 추가적인 규범적 명확성 없이 권리 목록 전체를 복제하기보다는 노인에게 특화된 공백과 장벽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50. 동시에, 기존 기준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파편화되어 있거나 충분히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범적 발전이 필요한 영역들을 국가 의견에서 광범위하게 식별하였다. 장기요양은 품질, 가격 적정성, 이용 가능성, 사전 동의, 책임성 및 시설 내 학대로부터의 보호 기준을 포함하여 핵심적인 공백 영역으로 반복되어 언급되었다. 여러 의견은 인권에 기반한 장기요양 체계와 노인의 선호 및 자율성과 부합하는 경우 지역사회 기반 및 재가 돌봄 모델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51. 보건 관련 권리는 연령 맞춤형 보건 서비스, 노인의학적 돌봄, 재활 및 완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여 노년기에 더욱 구체적인 규범적 명확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자주 강조되었다. 여러 의견은 본 문서는 보건 서비스 접근에서의 차별을 다루고, 인간 중심의 돌봄을 보장하며, 완화 의료 및 생애 말기 존엄성과 관련된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의견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삶의 가치를 폄하하는 관행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존엄한 돌봄의 일환으로 도덕적·영적 차원을 포함한 동반과 지원을 강조하였다.
52. 경제적 보장과 사회적 보호 역시 노년기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조치의 적절성과 접근성을 포함하여 강화된 규범적 명확성을 요하는 분야로 제기되었다. 국가 의견들은 소득 보장, 연금 및 사회부조를 노인의 인권 향유를 위한 필수적인 가능 조건으로 언급하면서, 이행 시 각국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53. 노동 및 경제 생활 참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일부 국가 의견은 고용에서의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재교육 및 기술 향상을 포함하여 희망하는 경우 노동 시장 및 평생 학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다른 의견들은 존엄성이 경제적 생산성에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은 자율적

이고 강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한 의견은 정년 연장/정년제를 연령 차별과 명시적으로 연결하며 노동권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4. 디지털 포용과 기술의 역할은 규범적 공백 영역으로 강조되었다. 여러 국가 의견은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접근성, 디지털 및 알고리즘 차별로부터의 보호 장치가 인권 실현 조건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배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비디지털 채널을 통해서도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온라인 사기 및 재정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역시 특히 노인을 위해 주의가 필요한 새로운 위험 요소로 제기되었다.
55. 사법 접근성은 더 명확한 기준과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영역으로 반복되어 강조되었다. 의견들은 비용, 거리, 복잡성 및 디지털화를 장벽으로 지목하고, 후견, 상속, 재산 및 돌봄 결정 상황을 포함하여 연령 감수성 있는 절차적 배려, 법률 구제, 아웃리치 및 효과적인 진정 기구를 요구하였다. 일부 의견은 사법 접근성을 권리 및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에 관한 접근 가능한 정보의보급 필요성과 연결짓기도 하였다.
56. 마지막으로, 여러 의견은 위험 상황 및 비상사태를 다루는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인도적 위기, 재난,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 변화의 영향이 포함되었으며, 노인이 종종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대비, 대응 및 회복 조치에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의견들은 비상 상황에서의 비차별 보장과 계획 및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을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57.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가 존엄성, 평등 및 비차별, 자율성과 독립성, 참여와 포용을 포함한 핵심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해당 의견은 노인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 생애주기에 걸쳐 노인이 권리주체로 인정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8. 제출된 의견 전반에 걸쳐, **국가인권기구들**은 미래의 문서가 기반으로 삼아야 할 일관된 핵심 원칙들(존엄성, 평등 및 비차별, 자율성과 독립성, 참여와 포용 포함)을 식별하였으며, 연령을 금지된 차별 사유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인권 향유의 구조적 장벽으로서 연령주의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59. 국가인권기구들의 의견은 실질적 평등, 접근성, 노인 간 다원성 인정과 관련된 원칙들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여기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차적·누적적 차별을 다룰 필요성이 포함된다. 또한 노인을 돌봄과 보호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사회 및 권리

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의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그들의 주체성과 기여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60. **국제기구들**은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과 같은 기존 국제 기준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면서 존엄성, 자율성, 참여, 돌봄, 평등 및 비차별을 포함한 확립된 인권 원칙들을 재확인하였다. 한 의견은 건강, 자율성, 참여 및 경제적 보장이 상호 보강적이며 고립되어서가 아니라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는 이해를 포함하여 권리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였다.
61. 제출된 의견 전반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고령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차별에 대한 명시적 인정과 모든 조항에 걸쳐 성평등을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를 포함하여, 교차적이고 성별 감수성 있는 접근 방식을 보장할 필요성이었다.
62. 여러 의견은 노인의 삶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여 참여와 포용을 범분야적 원칙으로 강조하였다.
63. 다른 의견들은 적절한 주거, 접근성 및 환경 조성과 관련된 원칙들을 강조하였으며,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물리적·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인권의 실질적 향유를 위한 조건이라는 인식을 포함하였다.
64. 특히 고령 여성과 관련된 연령 및 성별 분리 데이터의 부재를 포함하여 규범적·데이터 공백을 다루고, 정책 및 모니터링 체계에서 노인이 지속적으로 비가시화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추가로 강조되었다.
65. 제출된 의견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래 문서의 규범적 기초이자 노화에 대한 온정주의적·의료화된·보호 중심적 접근법에 대한 방어막으로 일관되게 규정된 종합적이고 상호 연관된 핵심 지도 원칙들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해석, 이행 및 책임성을 이끌어야 하는 운영상의 법적 기준이었다.
66. 핵심적이고 여러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으로 연령주의의 철폐와 구조적·제도적·체계적 양상을 포함한 연령 차별의 금지가 제시되었다. 제출된 의견들은 연령 차별이 정책, 자격 요건, 서비스 설계 및 사회적 규범을 통해 암묵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디지털 시스템과 기술 환경에 점차 내재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차별을 금지하고, 의료, 고용, 사회적 보호, 서비스 및 사법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하여 연령차별적 구조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식별, 예방 및 해체하도록 요구받아야 한다.

67. 이와 연결하여, 다수의 의견은 형식적 평등을 넘어 구조적 불이익, 누적된 불평등 및 불평등한 결과를 해결하는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실질적·변혁적 평등 원칙을 강조하였다. 의견들은 노인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소외된 집단 및 빈곤이나 배제 상황과 관련하여 적극적 조치, 정당한 편의 제공 및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였다.
68. 존엄성 원칙은 신체적 완전성, 정신적 안녕, 사생활, 정체성 및 자아표현을 포함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이해를 포괄하며 일관되게 핵심으로 식별되었다. 일부 의견은 존엄성에 친밀성, 성적 지향/성적 특성 및 개인적 관계에 대한 인정도 포함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기존 체계, 특히 이러한 차원이 제한되거나 무시되기 쉬운 시설 돌봄 환경에서 여전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69. 자율성, 독립성 및 법적 능력 원칙은 연령, 장애 또는 돌봄 필요성과 관계없이 노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유지한다는 인식을 포함하여 의견 전반에서 강력하게 강조되었다. 시민사회는 지원 메커니즘이 개인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고 대치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지원 의사결정 체계, 사전 계획 도구 및 보호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70.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은 보건 및 돌봄 환경에서의 사전 동의에 대한 권리와 접근 가능한 정보, 명확한 소통, 치료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71. 참여와 포용 원칙은 광범위하게 강조되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정책 수립, 서비스 설계,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노인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여는 자문기구 내 대표성 확보 및 공식 대표단 포함 등을 통해 구조화되고, 접근 가능하며, 지원되어야 한다.
72. 의견들은 또한 성별, 장애, 민족, 이주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및 지리적 요인과 연결된 복합적·교차적 차별 형태를 포함하여 교차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고령 여성, 소외 집단, 원주민 및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집단이 직면한 복합적인 불평등에 주의가 기울여졌다.
73. 접근성과 포용 원칙은 정보, 서비스, 인프라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의 실질적 향유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부각되었다. 의견들은 디지털 배제, 리터러시 장벽, 언어 장벽 및 시스템 복잡성을 해결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74. 의견들은 또한 사법 접근성 및 효과적인 구제 수단의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접근 가능한 진정 기구, 법률 구제, 사법적 구제 및 독립적 감독을 통해 인권이 실천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은 권리 기반 체계가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요구하며, 적시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노인의 상황에 적합한 구제 수단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기구가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75. 시민사회단체의 다수 의견은 돌봄, 지원 및 장기요양 체계와 관련된 원칙들을 강조하면서, 돌봄이 인권, 자율성 및 존엄성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부각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돌봄이 인간 중심적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탈시설화되어야 하며, 독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을 지원해야 하고, 권리 제한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76. 이와 연결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국제인권법상의 기존 공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한 독자적이고 새로운 규범적 영역으로서 장기요양 및 지원에 대한 인권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77. 의견들은 또한 적절한 소득, 연금, 고용 기회 및 평생 학습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사회적 보호 및 경제적 보장 관련 원칙뿐만 아니라 무급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한 노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을 강조하였다.
78. 폭력,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원칙 역시 가정, 지역사회 및 시설 환경에서의 폭력을 다룰 필요성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강조되었다. 의견들은 학대가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예방적·보호적·책임성 기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79. 의견들은 또한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을 인정하고 포용적이며 연령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세대 간 연대 및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원칙들을 강조하였다.
80. 마지막으로, 여러 의견은 모든 원칙이 책임성, 진보적 실현 및 후퇴 금지의 체계 내에서 작동해야 하며, 기존 보호 장치의 후퇴를 막는 동시에 인권 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81. 전문가 및 학계를 포함한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확장된 규범적 차원을 제시하는 한편, 존엄성, 자율성, 평등 및 참여와 같은 핵심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여럿은 노인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요구하며 참여를 핵심 원칙으로 강조하였다.
82. 다수의 의견은 돌봄 관계 및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관계적·상호의존적 접근 방식을 포함하여 자율성과 존엄성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발전시켰다.

83. 일부 의견은 구조적 불이익과 체계적 차별을 다루는 실질적·변혁적 평등을 강조하였다. 다른 의견들은 돌봄을 핵심 인권 원칙으로 특별히 강조하였으며, 여기에는 존엄성, 자유 및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동의에 기반한 지원 및 돌봄에 대한 접근성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일부 의견은 취약한 상황 및 생애 말기 돌봄에서의 동반과 지원을 포함하여 연대와 세대 간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III. 전반적인 구조 및 체계

84. 향후 제정될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전반적인 구조 및 체계와 관련하여, 의견들은 대체로 미래의 문서가 확립된 유엔 조약 관행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일관되며 포괄적인 구조를 채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많은 국가는 본 협약이 최소한 전문(Preamble), 정의(Definitions),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일반 의무(General obligations), 특정 권리 또는 보호 영역에 관한 실체적 조항(Substantive section on specific rights), 그리고 이행 및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Provisions o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85. 전문과 관련하여, 의견들은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 지속되는 연령주의, 그리고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 있는 보호의 공백 등 본 문서의 배경과 취지를 제시하는 전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여러 의견은 전문이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을 재확인하고, 노인의 기여와 더불어 노인이 인권을 향유함에 있어 직면하는 특수한 장벽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86. 정의 조항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는 노인, 연령주의 및 연령 차별과 같은 핵심 용어를 정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직된 연령 기준을 피하고 다양한 국가적·사회적 맥락에 맞는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의견은 연령 자체보다는 권리 향유의 장벽에 초점을 맞춘 기능적 또는 운영적 정의를 제안하였다. 다른 의견들은 정의가 낙인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보호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통일된 해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맥락에서의 명확성, 포용성 및 수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언어 선택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노인을 기술하는 용어의 민감성에 주의가 기울여졌다.
87. 의견들은 해석과 적용을 이끄기 위한 일반 원칙 장의 포함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원칙으로 국가들은 존엄성, 평등 및 비차별, 자율성과 독립성, 참여와 포용, 접근성, 그리고 폭력, 학대, 방임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을 자주 제시하였다. 여러 국가는 원

칙이 실무적 이행과 모니터링을 이끌고 여러 관할권에 걸쳐 일관된 해석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88. 의견들은 또한 입법·행정·정책 및 기타 조치의 채택, 관련 정책 분야 전반에 걸친 노인 문제의 주류화(mainstreaming ageing), 연령주의 퇴치, 접근성 보장, 연령 분할 데이터 수집,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노인 참여의 제도화 등의 의무를 포함하여 당사국의 일반 의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부 의견은 일반 의무가 효과적인 진정 기구 및 사법 접근성을 포함하여 예방과 구제를 모두 다루어야 한다고 추가로 강조하였다.

89. 권리에 관한 실체적 조항과 관련하여, 의견들은 본 문서가 기존 권리가 노년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고, 보다 구체화된 규범을 통해 식별된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여러 국가는 보건 및 보건 서비스 접근성, 장기요양 및 완화 의료, 사회적 보호 및 경제적 보장,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사법 접근성, 참여와 포용, 그리고 접근성과 관련된 권리를 강조하였다. 일부 의견은 권리 장이 포괄적이면서도 기술 변화를 포함하여 발전하는 맥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90. 이행, 모니터링 및 책임성과 관련하여, 의견들은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가 문서의 실효성에 핵심적이라는 점 논의하였으나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었다. 여러 국가는 정기 보고를 포함한 견고한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조약 모니터링 기구의 설립과 진정 절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다른 의견들은 중복을 피하고, 국가와 유엔 체계의 재원 제약을 고려하며, 기존 기구를 기반으로 하는 간소화되거나 혁신적인 모니터링 접근 방식을 설계하거나, 국가의 인권 의무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존 모니터링 기구를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부 의견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제한하면서 국가 간 대화, 우수 사례 공유 및 협력을 촉진하는 기구를 포함하여 혁신적이고 간소화되거나 혼합된 형태의 책임성 및 모니터링 모델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91. 다양한 접근 방식 전반에 걸쳐, 많은 의견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노인 및 노인 대표 기구의 참여, 그리고 국가인권기구와 옴부즈맨을 포함한 국가 독립 모니터링 기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92. 다수의 의견은 이행 조항이 실행 가능성, 관련 있는 경우 인권의 진보적 실현, 그리고 특히 개도국을 위한 국제 협력 및 기술 지원을 명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모니터링 체계는 문서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주권을 존중

하고 국가의 역량과 재원을 고려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일부 의견은 조약 관행에 부합하게 서명, 비준, 발효 및 개정에 관한 최종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93.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이행을 지원하고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체계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의견은 또한 본 문서가 전문, 일반 원칙, 일반 의무, 특정 권리, 그리고 이행·모니터링·책임성에 관한 조항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명확하고 포괄적인 구조를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94. **국가인권기구들**의 의견은 전문, 정의, 일반 원칙, 일반 의무, 특정 권리, 그리고 이행 및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 포함하여 확립된 유엔 인권 조약 관행과 부합하는 포괄적이고 일관된 조약 구조를 지지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가 국가 차원에서 협약의 행정적·사법적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명확성, 일관성 및 집행 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95. 여러 의견은 견고한 이행 및 책임성 체계에 의해 뒷받침되는,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해야 하는 국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은 독립적 모니터링, 보고 절차, 효과적인 구제 수단, 그리고 이행 및 후속 조치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구체적 기여를 포함한 국가 감독 기구의 역할을 부각하였다. 또한 개선된 데이터 수집, 국제 협력, 그리고 식별된 보호 공백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인권의 실질적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96. **국제기구들**의 의견은 전문, 정의, 일반 원칙, 일반 의무, 특정 권리 및 이행 조항을 포함하여 표준적이고 일관된 조약 체계를 대단히 지지하였다.
97. 여러 의견은 기존 기구와의 중복을 피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제인권조약 및 진행 중인 유엔 프로세스를 포함한 기존 국제 틀과 본 협약의 구조가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행과 책임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한 노화, 다차원적 형태의 연령주의, 연령 친화적 환경, 그리고 통합적·인간 중심적 돌봄과 같은 핵심 운영 개념을 정의 조항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98. 의견들은 적절한 감독 기구의 설립, 강화된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기존 보고 체계로의 통합을 포함하여 강력한 이행 및 모니터링 조항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99. 일부 의견은 주거, 토지 및 도시적 차원의 권리에 대한 명시적 인정, 그리고 모든 조항에 걸친 성평등 및 고령 여성에 대한 특화된 초점을 포함한 성별 특화 조항의 통합 등 구조 내에서의 더 높은 구체성을 제안하였다.
100.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들의 의견은 문서체계가 명확성, 접근성 및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국제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국가적 맥락에 적응할 수

있는 조항과 명확한 정의('노인' 등)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01. **시민사회의 의견들**은 노인의 특수한 현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혁신 요소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국제인권기구들과 긴밀히 부합하는 포괄적이고 일관되며 운영 가능한 조약 체계의 개발을 광범위하게 지지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문서의 실효성이 규범적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의 명확성, 구조성 및 현장 이행을 견인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102. 의견들은 본 문서를 더 넓은 사회적·정치적·인구학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전문의 포함을 일관되게 지지하였다. 전문은 전 세계적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노인의 역사적·지속적 소외를 인정하며, 연령 차별에 더해 구조적·체계적 현상으로서의 연령주의를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은 인구 구조 변화를 단순히 도전과제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노인의 기여와 역할을 인정하는 기회로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03. 명확한 정의 및 적용 범위 조항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으며, 특히 '노인'의 개념, 연령 차별, 접근성, 돌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졌다. 의견들은 정의가 유연하고 맥락 감수성을 유지해야 하며, 경직된 연령 기준이나 역사적 연령 접근법을 피하고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맥락 전반에서 포용적인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04. 의견들은 문서 전체에 대한 해석적·운영적 지침으로 기능하는 일반 원칙 전용 장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히 선언적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의 입법, 정책 및 사법적 해석을 이끌어야 한다.

105. 입법·행정·정책 및 예산 조치를 통해 노인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여 국가의 일반 의무를 구체화하는 데 강력한 초점이 맞추어졌다. 의견들은 의무가 구조적 차별, 시스템 설계 및 접근 장 장벽을 명시적으로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자 및 서비스 시스템을 포함한 민간 주체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가 모든 정책에 걸쳐 노인 문제를 통합('노인 문제 주류화')하고 보건, 돌봄, 주거 및 사회적 보호와 같은 분야 전반에서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06. 많은 의견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권리 목록을 포함하는 동시에 노인에 대한 권리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의견들은 본 문서가 기존 권리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현행 체계가 모호하거나 불충분한 영역을 포함하여 노년의 맥락에서 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07. 이와 관련하여, 의견들은 장기요양, 완화 의료, 자율성과 법적 능력, 폭력과 학대, 디지털 포용, 경제적 보장, 그리고 인도적·위기 상황에서의 권리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 걸친 규범적 공백을 해결할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따라서 본 문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 의무 및 이행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공백을 메우고, 권리가 단순히 인정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08. 시민사회단체들은 또한 조약 구조가 서로 다른 정책 시스템 간의 통합, 특히 현장에서 파편화되어 인권 향유의 장벽을 창출하곤 하는 보건, 돌봄 및 사회적 보호 시스템 간의 조정을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09. 제출된 의견 전반에 걸쳐 견고한 이행, 모니터링 및 책임성 기구의 설립은 문서의 실효성에 결정적인 요소로 널리 식별되었다. 제시된 제안으로는 국가에 법률, 정책 및 제도적 기구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국가 이행 체계, 국가인권기구나 전담 감독기구와 같은 독립 모니터링 기구,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백을 식별할 수 있는 정기 보고 의무, 조약 기구나 전문가 위원회를 포함한 국제 모니터링 기구, 피해자가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및 집단 진정 기구, 그리고 권고 및 심의 절차를 포함한 후속 조치 절차 등이 포함되었다.
110. 의견들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참여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하며, 보고, 검토 및 평가 프로세스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노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11. 의견들은 또한 권리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실현 가능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효과적인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히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접근 가능한 진정 기구, 법률 구제, 절차적 배려, 그리고 노인의 필요에 맞춘 보호 장치의 이용 가능성이 포함된다. 여러 의견은 국가 차원에서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기구가 부재할 경우 권리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112.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수집, 연구 및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 특히 가시성, 책임성 및 정보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연령 분할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의 중요성을 추가로 강조하였다. 데이터는 성별, 장애, 민족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교차적 차원을 반영해야 한다.
113. 의견들은 또한 다양한 국가적 맥락 전반에서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자원이 부족한 환경을 위한 기술 지원, 역량 강화 및 우수 사례 공유를 포함한 국제 협력 및 지원 관련 조항을 강조하였다.

114.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반적인 체계가 실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적응력이 있어야 하고, 인구 연령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및 인도적 위기를 포함하여 발전하는 전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문서는 법적 명확성과 운영상의 유연성을 결합하여 시간이 지나도 유효성과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5. 전문가 및 학계를 포함한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추가적인 운영적·기술적 요소를 제시하는 한편, 표준적인 조약 구조(전문, 정의, 원칙, 의무, 권리 및 이행 조항)를 광범위하게 지지하였다.
116. 여러 의견은 모니터링 체계 및 데이터 시스템을 포함하여 견고한 이행 및 책임성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이해관계자는 위험 상황 및 인도적 비상사태에 관한 전용 조항, 집행 가능한 권리 틀로서의 돌봄 시스템 및 지원 접근성에 대한 명확한 구체화, 그리고 사회적 보호 설계 및 급여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 접근 방식을 포함하여 주요 영역에서의 더 높은 구체성을 제안하였다.
117.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은 형사 사법 및 수용 환경, 그리고 권리 보호 및 진정 체계에서의 실무적 장벽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포함이 필요한 영역들을 부각하였다.
118.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체계가 명확하고 접근 가능하며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쉬운 언어의 사용과 권리주체의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 등을 통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